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이미자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설 (안 제5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7조)
-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고,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397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 의 자: 이미자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설 (안 제5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7조)

다.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10. 6. ~ 10. 12.):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파.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제8조제2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착수기한 내**”를 “**착수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관계전문**”을 “**관계 전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중 “**관계전문**”을 “**관계 전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9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 50 | 50 |   |
| 3.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40 | 60 |   |
|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50 | 50 |   |
| 5.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50 | 50 |   |
| 6.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50 | 50 |   |
|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0 | 50 |   |
| 8.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50 | 50 |   |
| 9.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50 | 50 |   |
| 1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50 | 50 |   |
| 11.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50 | 50 |   |
|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0 | 50 |   |

별표 1 제1호나목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목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50 | 50 |   |
| 3. 경로당의 보수                                 | 50 | 50 |   |
|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50 | 50 |   |
|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50 | 50 |   |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50 | 50 |   |
|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50 | 50 |   |
|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 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60 | 40 |   |
| 13.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 50 | 50 |   |
|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0 | 50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br/>가. ~ 다. (생략)</p> <p><u>&lt;신 설&gt;</u></p> <p>라. ~ 카. (생략)</p> <p>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u>한한다</u>)</p> <p>가. ~ 카.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타. (생략)</p> | <p>제5조(지원대상) -----</p> <p>-----</p> <p>-----</p> <p>-----</p> <p>-----</p> <p>-----</p> <p>1.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u></p> <p>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p> <p>2. -----</p> <p>-----</p> <p>-----</p> <p>----- <u>한정한다</u>-----</p> <p>-----</p> <p>가. ~ 카. (현행과 같음)</p> <p><u>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u></p> <p><u>파.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u></p> <p><u>하. (현행 타목과 같음)</u></p> |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④ -----  
-----  
-----  
----- 마련-----.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계 전문-----  
-----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만 연임-----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계 전문-----  
-----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제27조(감사대상 및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9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감사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위-----.

제29조(감사실시) ① ----- 제28조-----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규정)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 원 사 업                                | 구<br>분<br>담<br>률 | 공<br>동<br>주<br>택<br>분<br>담<br>률 | 비 고(증감률)  |
|--|------------------|---------------------------------|---|
|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 50               | 50                              |   |
| 3.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40               | 60                              |   |
|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50               | 50                              |   |
|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50               | 50                              |   |
|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0               | 50                              |   |
|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50               | 50                              |   |
| 8.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50               | 50                              |   |
| 9.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50               | 50                              |   |
| 10.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50               | 50                              |   |
|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0               | 50                              |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 원 사 업                                | 구<br>분<br>담<br>률 | 공<br>동<br>주<br>택<br>분<br>담<br>률 | 비 고(증감률)  |
|--|------------------|---------------------------------|---|
|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 50               | 50                              |   |
| 3.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40               | 60                              |   |
|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50               | 50                              |   |
| 5.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50               | 50                              |   |
| 6.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50               | 50                              |   |
|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0               | 50                              |   |
| 8.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50               | 50                              |   |
| 9.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50               | 50                              |   |
| 1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50               | 50                              |   |
| 11.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50               | 50                              |   |
|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0               | 50                              |   |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지 원 사 업                                    | 구<br>분담률 | 공동주택<br>분담률 | 비 고(증감률)  |
|--|----------|-------------|---|
|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50       | 50          |   |
| 3. 경로당의 보수                                 | 50       | 50          |   |
|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50       | 50          |   |
|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50       | 50          |   |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50       | 50          |   |
|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50       | 50          |   |
|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0       | 50          |   |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지 원 사 업                                    | 구<br>분담률 | 공동주택<br>분담률 | 비 고(증감률)  |
|--|----------|-------------|---|
|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5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li> <li>■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li> <li>■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li> </ul> |
|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50       | 50          |   |
| 3. 경로당의 보수                                 | 50       | 50          |   |
|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50       | 50          |   |
|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50       | 50          |   |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50       | 50          |   |
|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50       | 50          |   |
|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50       | 50          |   |
| 1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60       | 40          |   |
| 13.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 50       | 50          |   |
|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0       | 50          |   |